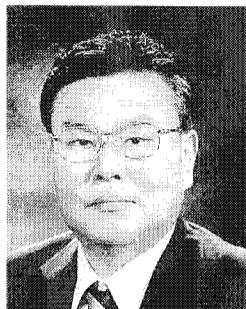


한의학육성법시행 관련 전문가 의견

한약재 생산주체는 농민 생산기반 조성이 우선 시급



수년전 한의계를 중심으로 '우리 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최근에는 '한의학 육성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마련 중에 있다. 운동본부도, 법령도 한약재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며 몸부림이라 치자. 허나 작금의 현실을 냉정히 보지 못하고 세심하게 분석치 못한 말뿐인 움직임은 아닌지, 또 다른 마찰, 또 다른 이권 분야를 제공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할 길 없다.

“국내 생산기반
붕괴될 위기 …
무엇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인증한다는 건지 …”

한의학계, 업계, 정부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약재 즉, 약용작물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도 취지만 그럴 듯 할 뿐 식품용도 수입, 불법유통의 바람막이 역할로 전락되고 존치의 이유를 잃은 지 오래다.

뭐니 뭐니 해도 한약재의 생산주체는 농민이다. 말만 중요하지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하다보니 이제 강원도 지역의 당귀 밭, 이천, 구례의 늙은 산수유나무나 남았을까? 그 엄청나던 의성의 작약 밭도 영양지역의 일천궁도 청양의 구기자도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는 없어져 간다.

이런 판국에 무슨 의약품으로서의 품질관리를 하고, 품질인증을 하겠다는 건가? 필자도 약용작물 연구가

임무인 정부조직의 책임자로서 약용작물의 생산기반이 봉고직전까지 오게된 책임으로 자괴감마저 갖는다. 한의학육성법을 근거로 시행을 준비중인 한약진흥재단에서는 한약재의 품종개발, 재배·생산기술 개발까지 한다고 한다. 이 분야 연

구개발은 기존의 정부조직 즉, 농촌진흥청의 임무이다. 품질관리 문제, 품질인증 문제를 놓고 해당 정부 부처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관련법과 규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는 한약재 생산의 현주소가 어딘지,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녕 의약품 원료로서의 한약재를 살리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한의학을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지를 냉철히 판단하기 바란다.

말만 요란하고 애매한 기능만 만들어 다툼하고, 군림하고 자칫 현재보다 못한 지경으로 몰고가지 않나하는 불안을 떨칠 수 없는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진다면 실체가 보이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국산인지 수입품인지도 구별 못하는 판국에, 국내생산은 기반이 붕괴될 위기인데 무엇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인증한다는 말인가? 한의학에서 꼭 필요한 최소품목만이라도 최소량만이라도 생산기반만이라도 유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생산비도 보상 안해는 농사를 누가 짓겠는가? 만시지탄이 놋두리가 되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성낙술 과장 - 작물과학원 인삼약초과〉

대표적인 한약서적인 방약합편에 515종류의 한약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문어 낙지 오징어 봉어 메기 쏘가리 돼지고기 닭고기 등 동물성 한약재가 110종이 수록되어 있고, 쌀 보리 옥수수 옥류 등을 인삼 영지버섯 마늘 생강 대추 칡깨 들깨 등 건강원 식당 식품회사에서 사용하는 한약재가 400여종이 됩니다. 약사감시 담당공무원 수십명에게 물어봐도 위에 있는 동물성한약재 110종이 의약품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담당공무원은 돼지고기 닭고기도 의약품이라고 하더군요.

약사법제26조1항의 규정에는 의약품이란 제약업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약재는 의약품허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의약품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무허가 의약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약재를 의약품의 범주로 묶기 위해 약사법제26조1항의 규

“농산물인 약용작물을 의약품으로 얹어매려는 것”

정을 적용하여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95년 3월25일) 그래서 현재 숙지황 천궁 당귀 작약 등 69종의 한약재를 필수 규격화하여 약국이나 한약도매상등의 한약취급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69종을 제외한 수백 종의 한약재는 상대적으로 무허가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필수규격화대상인 69종의 한약재만 의약품의 범주로 잡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게다가 국산 한약재는 69종에 해당되더라도 한약재의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 가공 포장하여, 도매도 할 수 있고 소매도 할 수 있으며, 수입한약재는 식품의 원료로 무제한 유통되고 있으며, 또한 식품회사나 건강원에서도 식품공전에 수록된 400여종의 한약재를 근거로, 수십 종류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합법적으로 무제한 달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한약재의 품질향상이라는 미명하에 허울 좋은 한의약육성법을 만들어 농민이나 농림부 식약청 약사회 한약사회 등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재편성,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약사법제26조1항의 제약업허가와 품목허가 규정을 무시하고, 약용작물인 농산물을 의약품으로 얹어매려는(품질인증) 것일 뿐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한약재를 농산물로 규정하고, 우황청심원 생화탕 등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한약제만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약사법에 한약재가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농산물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약재를 의약품이라고 착각하고 집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약재의 품질향상은 농업기술이나 약학기술 분석화학 미생물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위생화학 독성학 약물학 생약학 약용식물학등의 첨단 과학으로 하는 것이며, 한방이론이나 한의시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방정책관실은 지금이라도 이를 깨닫고 다른 기관이나 부처의 업무를 월권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성영 부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New vision, New culture, New action -

중앙대학교 인삼산업최고전문가과정 모집

■ 모집과정

- 산업경영대학원 제5기 인삼산업최고전문가 과정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내외

■ 수료기간

- 1년 과정(2학기: 가을학기, 봄학기)

■ 지원자격

- 학력 제한 없음

■ 강의 요일 및 시간

- 매주 토요일 14:00~18:00

■ 원서교부

- www.ginseng.re.kr에서 다운받거나,
중앙대학교 인삼산업연구센터에서 교부

■ 원서접수기간

- 현재~2004년 8월 31일(우편, FAX, 온라인 접수 가능)

■ 원서접수장소

-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인삼산업연구센터

■ 원서접수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FAX : 031) 676-6544
E-mail : sungkwon@cau.ac.kr
: cuteji78@hanmail.net

■ 과정문의처

- TEL. 031) 670~4680, 4683
※ 적정인원 미달시(20명) 폐강될 수도 있음.

■ 특 전

- 우수원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 지급
- 1년 과정 이수자에게는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및 산업경영대학원 동문회 정식회원으로 가입



아름다운 사회를 주도하는
중央大學 산업경영대학원
<http://www.ginseng.re.kr>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Tel:031-670-4680